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08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정혁진, 김정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이서원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9가단520085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5,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2018. 6. 26.부터 2018. 9. 17.까지 C에게 가스보일러와 그 부속품을 공급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2. 5. ‘C는 원고에게 미화 375,595.11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212).

2)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2022. 8. 17. ‘C는 원고에게 미화 375,595.11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지연손해금만 일부 기각)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3) C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1.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68313).』

○ 제1심판결 3면 4행의 “439,634,076.255원”을 “439,634,076.255원(2019. 7. 3. 자

환율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갑제7, 8, 10호증”을 “갑 제7, 8, 10, 12호증, 을 제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준거법의 결정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한민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일부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대한민국법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2.”, 같은 면 아래에서 4행의 “3.”, 4면 10행의 “4.”를 차례로 “3.”, “4.”, “5.”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서울 중구 H

철근콘크리트조(지상) 에스알씨조(지하) 평스라브지붕 지하5층 지상15층 업무시설

1층 248.71㎡

2층 338.73㎡

3층 323.05㎡

4층 331.05㎡

5층 347.84㎡

6층 339.59㎡

7층 347.84㎡

8층 339.59㎡

9층 347.84㎡

10층 339.59㎡

11층 347.84㎡

12층 339.59㎡

13층 347.84㎡

14층 339.59㎡

15층 347.99㎡

지하1층 480.98㎡

지하2층 480.98㎡

지하3층 520.65㎡

지하4층 520.65㎡

지하5층 350.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중구 F 대 82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1호 철근콘크리트조 39.8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26.7분의 7.317. 끝

